의 안 2138 버호

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从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8. 25.(금).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8. 25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9. 7.(목)

2. 제안이유

○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등 운영근거를 마련하고,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시설 정의에 "다목적체육관" 명시 (안 제2조)
- 나.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사용요금 등 별표 개정(별표1, 별표2)
- 다.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사용료 감면 신설, 체육시설 관리운영자 귀책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 배상비율 규정 신설 (안 제8조 ~ 안 제9조)

4. 근거법규

○ 「국민체육진흥법」제8조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용료 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도입으로 공공체육시설 운 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